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(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을 따르며,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3항 단서,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호	150	220	300
나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2호	150	220	300
다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3호	150	220	300
라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1호	500	750	1,000
마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·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2호	500	750	1,000
바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1호	100	150	200
사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	법 제73조 제3항제4호	150	220	300

은 경우				
아.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6호		300	
자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2호		200	
차.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7호	70	150	300
카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8호	150	220	300
타.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9호	150	220	300
파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0호		300	
하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(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,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)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3호	100	150	200
거.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5항제1호		100	
너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4호	100	150	200

다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1호	150	220	300
러.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2호	150	220	300
머.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3호	150	220	300
버.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4호	150	220	300
서.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(법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	법 제73조 제4항제5호	100	150	200
어.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5호	150	220	300
저.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6호	150	220	300
처.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6호			
1)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		20	40	60

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				
2)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커.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7호	100	150	200
터.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8호	100	150	200
퍼.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9호			
1)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			20	
2)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			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. 다만,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	
허.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10호	100	150	200
고.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(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)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을 판매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10호의2	100	150	200
노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11호		200	
도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	법 제73조 제4항제12호		200	

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
로.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	법 제73조 제5항제2호	20	50	100
모.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3호		800	
보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3조 제1항제1호	1,000	1,500	2,000
소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4호	500	750	1,000
오.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7호	150	220	300
조.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3조 제4항제13호			
1)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2)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			
가)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		경고	50	100
나) 그 밖의 경우		100	150	200
초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	법 제73조 제4항제14호	100	150	200

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			
코.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8호		300	
토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3조 제1항제2호	1,000	1,500	2,000
포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19호	150	220	300